

건축공학전공 교육과정 운영내규1)

제1조(목적) 이 내규의 목적은 동국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과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및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으로부터 위임받아 건축공학 교육과정의 운영을 정함에 있다.

제2조(교육과정)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조(교육과정)에서 위임받아 건축공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정한다.

① 본 학과는 심화과정(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본 학과에 재학 중인 2001학년도 및 이후 학생은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과정의 대상은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하는 학생과 학과가 공학교육인증을 중단한 상태에서 졸업하는 학생이다.

② 건축공학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산업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1. 프로그램운영위원회 : 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 4>(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정한다.
2. 평가위원회 : 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5>(평가 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3. 산업체자문위원회 : 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별첨6>(산업체자문 위원회 규정)에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의 결정)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교육과정의 결정)에서 위임받아 신입학생 및 전입생은 심화과정에 소속되며,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라 일반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에서 위임받아 심화과정 소속 학생의 일반과정으로의 소속변경을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심화과정 소속 학생들은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졸업 1년 전 1회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매 학기 개강 직후에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건축공학부 행정 사무실에 제출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개강 후 4주 이내에 교육과정 변경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졸업요건)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장 제5조(졸업요건)에서 위임받아 건축공학 졸업요건을 정한다.

-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요건은 <별첨 1>과 같다.
- ② (선 이수 체계의 준수) 2013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반드시 선 이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필수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후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단,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과하는 시험이나 과제 및 단담 등을 통하여 후수 교과목에서 요구되는 선수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학생에 한하여 필수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후수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 i) 전문교양(기초교양 또는 기본소양) 교과영역에 있어서 「<별첨 2> 건축공학 심화과정 세부 졸업요건의 1. 전문교양(기초교양 및 기본소양) 교과영역의 이수체계」에 주어진 바와 같다. 단, 2006학번까지는 창의적공학설계는 전문교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래의 에너지와 환경, 문화로서의 과학, 생명·과학·문화, 논리학개론, 윤리학개론, 과학·생명·가치, 환경과 사회 과목을 전문교양으로 인정한다.
 - ii) MSC(Mathematics, Science and Computer) 교과영역에서는 「<별첨 2> 건축공학 심화과정 세부 졸업요건의 2. MSC 교과영역의 이수체계」에 주어진 바와 같다.

1) 2016학년도부터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로, '교과과정 평가위원회'가 '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음.

1. 2012년 2월 졸업생부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영역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수치해석 교과목 학점인정) 2006년까지 이수한 학생은 수학이나 전산학 영역 중 희망하는 영역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2007년 이후에 이수한 학생은 수학 영역의 이수학점으로만 인정한다.
- iii) 전공 교과영역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필수교과목) 전공 교과영역의 교과목 중에서 '어드벤처디자인', '건축공학종합설계 1', '건축공학종합설계 2'는 필수교과목으로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4년도 입학생과 그 이전의 입학생은 '건축공학설계 1'과 '건축공학설계 2' 중 선택하여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어드벤처디자인'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설계과목으로 종전에 개설되었던 '건축기획 및 타당성검토' 또는 '건축공학설계'를 이수한 학생은 '건축공학종합설계 1' 또는 '건축공학종합설계 2'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이수체계) 전공 교과영역에서는 <별첨 2> (건축공학 심화과정 세부 졸업 요건)의 3-1. 전공 교과영역의 이수체계에 주어진 바와 같다.
 3. (설계교과목 이수요건) 전공 교과영역에서는 기초설계교과목(어드벤처디자인), 종합설계교과목(건축공학종합설계 1, 건축공학종합설계 2)을 반드시 포함하여 설계 12학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설계교과목 이수체계) 설계 교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별첨 2> (건축공학 심화과정 세부 졸업 요건)의 3-2. 전공 교과영역의 설계교과 이수체계에 주어진 바와 같다.
 5.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 기 이수한 설계 학점과 신규 수강 신청 시 포함된 설계 교과목의 학점 수의 합이 6학점 이상이 되어야 종합설계 교과목(건축공학종합설계 1)을 이수 신청할 수 있다.
 6. 종합설계 교과목인 건축공학종합설계1은 1학기에, 건축공학종합설계2는 2학기에만 개설하며 본 기준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7. (동일 유사 교과목) 공학주제(전공) 영역의 교과목들 중 <별첨 3>에 있는 교과목들은 동일 유사 교과목이므로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학점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8. 인턴십 설계학점은 학생이 제출한 설계보고서를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

9. IPP(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종합설계 1 또는 2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종합설계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결과보고서의 심사 및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여부를 결정한다.
- ③ 기타 졸업학점, 외국어 패스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 점수, 영어강의 이수 요건 등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따른다.

제6조(졸업사정)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졸업사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위원회는 매 학기 종강 후 심화과정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졸업사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졸업예정자들에게 공고한다. 단, 평가시점은 대학당국과 교무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졸업사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졸업예정자들은 졸업사정 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회는 재심 요청 마감 후 1주 이내에 재심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졸업예정자들에게 공고한다.
- ④ 평가위원회의 재심 결과의 공고와 함께 재심 결과를 포함한 모든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졸업사정 절차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1주 이내에 졸업사정 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고 공고한다.

제7조(전입생의 학점인정)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전입생의 학점 인정)에서 위임받아 다음의 절차에 따라 건축공학 심화과정으로 전입하는 전입생의 학점을 인정한다.

- ① 해당 학기에 전입생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는 대학이 개강하기 전까지 모든 전입생들의 학점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다. 단, 평가 시점은 대학당국과 교무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인정 여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모든 내용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1.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수는 인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의 학점 수와 동일하거나 많아야 한다.
 2.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이 인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이 인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의 설계 교육 내용과 동등하여야 한다.
 4.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실험실습 교육 내용이 인정 대상이 되는 교과목의 실험실습 교육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5. 전적 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적 대학/학과의 인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계획서, 강의 자료, 성적증명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②항의 결과를 해당 학생들에게 공고한다.
 - ④ 학점 인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임생들은 학점 인정 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는 재심 요청 마감 후 1주 이내에 재심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전임생들에게 공고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재심 결과의 공고와 함께 재심결과를 포함한 모든 전임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절차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⑦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1주 이내에 전임생의 학점인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8조(교육목표의 설정) 공학교육과정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조(교육목표의 설정)에서 위임받아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건축공학 심화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① 교육목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한 뒤 2~3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고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시 졸업생, 고용주, 산업체 및 재학생 등의 설문 혹은 인터뷰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② 교육목표는 대학교 및 공과대학의 교육목표와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 ③ 설정된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하

고,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 방법을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여 교육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목표 적절성 검토 및 개선)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교육목표 개선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위원회는 3년에 한번 2학기 종강 이전까지 교육목표 항목별 평가도구 및 평가방법 등에 따라 산업체자문위원, 고용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목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목표 적절성 검토 후 2주 이내에 교육목표 검토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교육목표 관련 개선은 매 6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도 있다.
- ④ 교육목표 관련 개선 연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회의록을 접수한 후 8주 이내에 6년간 수집된 교육목표 평가자료와 사회환경 변화 및 기술동향 등을 분석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고, 다음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공지한다.

제10조(프로그램 학습성과의 평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학습성과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위원회는 매년 2학기 종강 이전까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학습성과 항목별 평가도구, 평가방법 등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를 시행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후 2주 이내에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프로그램 학습성과 관련 개선 연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회의록을 접수한 후 8주 이내에 3년간 수집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고, 다음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별첨 7>에서 정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여 공고한다.

④ 프로그램 학습성과 관련 개선은 매 3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도 있다.

제11조(학생의 평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학생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위원회는 매년 제 1학기에 신입생에 대한 학업이수능력 평가와 재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단, 평가 시점은 대학 당국과 교무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는 학생 평가 후 2학기 종강 이전까지 학생 평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학생 관련 개선은 매 6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도 있다.
- ④ 학생 관련 개선 연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회의록을 접수한 후 8주 이내에 6년간 수집된 학생 관련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고, 다음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별첨 7>에서 정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및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12조(학생의 지도)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학생에 대한 지도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교수는 매 학기 수시로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매년 2학기 종강 이전에 학생 지도상담 현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학생 관련 개선은 매 6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도 있다.
- ④ 학생 관련 개선 연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회의록을 접수한 후 8주 이내에 6년간 수집된 학생 관련 상담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고, 다음 학

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공지한다.

⑥ 2020년도와 같이 코로나사태 등 정상적인 대면 상담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방식(화상, SNS, 통화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과정의 평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위원회는 매년 1학기 종강 직후 8주 이내에 직전년도 2학과와 당해 연도 1학기에 대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 평가 후 2학기 종강 이전까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교육과정 관련 개선은 매 6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도 있다.
- ④ 교육과정 관련 개선 연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회의록을 접수한 후 8주 이내에 6년간 수집된 교육과정 관련 평가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고, 다음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공지한다.

제14조(교수진의 평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교수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위원회는 3년에 한번 2학기 종강 이전까지 교수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교수진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교수진 평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교수진 관련 개선은 매 6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도 있다.
- ④ 교수진 관련 개선 연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회의록을 접수한 후 8주 이내에 6년간 수집된 교수진 관련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고, 다음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공지한다.

제15조(교육환경의 평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회는 3년에 한번 2학기 종강 이전까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교육환경 관련 개선은 매 6년을 주기로 시행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도 있다.

④ 교육환경 관련 개선 연도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회의록을 접수한 후 8주 이내에 6년간 수집된 교육환경 관련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심의 및 확정하고, 다음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공지한다.

부 칙(2011년 12월 31일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은 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12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3월 3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3월 1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25일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2월 3일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2월 5일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년 2월 5일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요건

1. 학점 인정 기준

- (1) 명칭이 변경된 동일유사 과목을 중복 수강한 경우에는 중복 수강한 교과목의 취득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 수강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 (2) 교과영역이 변경된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변경된 교과영역의 학점으로만 인정된다.
- (3) 기수강한 교과목의 교과영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수강한 교과목의 교과영역은 변경되기 이전 교과목의 교과영역과 변경된 후 교과목의 교과영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4) MSC/BSM 기초과학 영역에서 수강한 실험교과목 1, 2에 관하여 동일한 개론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개론과목은 MSC/BSM 취득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MSC/BSM 영역에서의 동일 교과목

[MSC/BSM 동일 교과목]

번호	년도				비고
	2000-2003	2004	2005~		
1	공학선형대수학	공학수학A	공학선형대수학		
2	변환이론	공학수학B	공학수학 1		
3	응용미적분	공학수학C	공학수학 2	페이지(2019년)	
4	일반수학 1, 2	미적분학 및 연습 1, 2	미적분학 및 연습 1, 2		
5	전기전자물리	기초전기전자	기초전기전자	페이지(2011년)	
6	공학수치해석	수치해석 및 실습	수치해석 및 실습	수학영역으로 변경(2007년)	
7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	지정 해지(2021년)	
8	공학컴퓨터응용	비주얼프로그래밍	비주얼프로그래밍	지정 해지(2021년)	

3.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졸업이수학점 기준표

가)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심화과정 졸업기준표

구분		입학년도	2015~2020학년도	2021~2022학년도	비고		
교양	공과대 지정	공통교양	14~16학점				
			기본소양	6학점			
				MSC	30학점		
		수학	미적분학및연습1, 미적분학및연습2		필수		
			공학수학1 또는 산업수학	산업수학			
			MSC	일반물리학및실험1		필수	
				일반화학및실험1, 일반화학및실험2, 화학개론, 일반생물학및실험1, 일반생물학및실험2, 생물학개론, 지구환경과학		1개 과목 선택필수 (동일 분야 '실험', '개론' 교과목 중복 수강 불가)	
		전산학	-		프로그래밍 기초와실습	필수	
			전산학 영역		-	1개 과목 선택필수	
		전공	단일전공 이수자 · 다중 전공 이수자 (주전공, 복수전공)	60학점 (설계 12학점 포함)		전공전문 교과목 50% 이상 이수	
어드벤처디자인(구. 창의적공학설계), 건축공학종합설계1, 건축공학종합설계2				필수			
* 설계 1학점 인정 교과목 : 건축공학기초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축물리모델링및유지관리, 건물공기조화설비, 건축및및환경공학, 건설시공및공법1 * 설계 2학점 인정 교과목 : 건설공정관리				선택필수 설계교과목 (설계교과목3학점 이상 필수 이수)			
졸업요건	취득학점		130학점				
	평점평균		2.0				
	외국어시험		TOEIC 700				
	영어강의		4개 과목	전공 2개 과목 이상			
졸업논문		졸업시험		학기 초 공지			

▶ 유의사항

- 건축공학종합설계1, 건축공학종합설계2
: 수강(신청)과목이 공학교육인증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수강(신청) 가능.
- 건축공학종합설계1 또는 건축공학종합설계2 이수 후 수강하는 과목은 건축공학종합설계 2 또는 건축공학종합설계1를 제외하고 설계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일반과정 졸업기준표

구분		입학년도	2015~2020학년도	2021~2022학년도	비고		
교과대 지정	공과대 지정	공통교양	14~16학점				
		MSC	기본소양	6학점			
			수학	MSC	30학점		
				미적분학및연습1, 미적분학및연습2, 공학수학1 또는 산업수학	산업수학		필수
			과학	일반물리학및실험1		필수	
		전산학	-	프로그래밍 기초와실습		필수	
전공	단일 전공 이수자	60학점		전공전문 교과목 50% 이상 이수			
	다중 전공 이수자	주전공	36학점				
		복수전공	36학점				
	필수교과목	어드벤처디자인(구, 창의적공학설계), 건축공학종합설계1, 건축공학종합설계2		전공필수			
졸업요건	취득학점	130학점					
	평점평균	2.0					
	외국어시험	TOEIC 700					
	영어강의	4개 과목		전공 2개 과목 이상			
	졸업논문	졸업시험		학기 초 공지			

▶ 유의사항

- 건축공학종합설계1 또는 건축공학종합설계2 이수 후 수강하는 과목은 건축공학종합설계2 또는 건축공학종합설계1를 제외하고 설계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 교과목 폐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동일 교과목 지정

변경 전		변경 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ARC4053	건조역학1	ARC2020	건조역학1
ARC4050	건축공학설계1	ARC4057	건축공학종합설계1
ARC4048	건설관리1	ARC4061	건설사업관리
ARC4049	건물급배수위생설비	ARC4062	건물유틸리티및방재시스템
ARC4040	건축철근콘크리트1	ARC4065	철근콘크리트설계1
ARC4055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ARC4034	건조역학2	ARC2021	건조역학2
ARC2014	건물의이해	ARC2022	건축공학기초설계
ARC2019	건축재료	ARC2023	건축재료실험
ARC4045	건설법규및계약	ARC4056	건설계약및운영
ARC4052	건축공학설계2	ARC4058	건축공학종합설계2
ARC4039	건축공학전산응용	ARC4060	건축소프트웨어응용
ARC4054	프리캐스트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구조설계	ARC4066	철근콘크리트설계2
ARC4059	건축철근콘크리트구조해석		

라) 건축공학전공 선수·후수 교과목 지정

전공	선수 교과목		후수 교과목1		후수 교과목2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건축공학	교필	RGC0005	기술보고서작성 및발표	전필	ARC 4057	건축공학 종합설계1	전필	ARC 4058	건축공학 종합설계2
	MSC	PRI4001	미적분학및연습1						
	MSC	PRI4012	미적분학및연습2						
	MSC	PRI4025 PRI4051	공학수학1 또는 산업수학 (2021학년도 이후)						
	전공	ARC2022	건축공학기초설계						
	전필	ARC2026	어드벤처디자인	전공	ARC 2022	건축공학 기초설계			
	전공	ARC2015	재료역학	전공	ARC 2023	건축재료 실험			
	전공	ARC2018	건설시공및공법1	전공	ARC 4036	건설시공 및공법2			
	MSC	PRI4002	일반물리학및실험1	전공	ARC 4065	철근콘크리트 설계1			

마) 건축공학전공 타 전공 인정 교과목 : 최대 인정 학점 18학점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건축학 (3과목 또는 9학점)	ARD2010	표현기법	3
	ARD2003	건축그래픽스	3
	ARD2020	건축설계입문	3
	ARD4002	건축환경계획	3
	ARD4007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3
	ARD4035	지속가능건축	3
건설환경공학과 (3과목 또는 9학점)	CIV2010	유체역학	3
	CIV2034	건설지질학	3
	CIV4010	토질역학1 및 실험	3
	CIV4011	토질역학2	3
	CIV4004	측량학 및 실험	3

■ 건축공학부내에 개설된 1학년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전공과목	
	건축학	건축공학
1학기	표현기법	어드벤처디자인
2학기	건축그래픽스	건축공학기초설계

건축공학부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공을 결정하기 전에 위의 표에 나타난 1학년 전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의 구분 없이 해당 수강 과목을 모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전공이 결정된 후에 수강한 것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건축학전공 선수·후수 교과목 지정

전공 구분	선수 교과목		후수 교과목1		후수 교과목2		후수 교과목3	
	학수 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전공 구분	학수 번호 교과 목명	전공 구분	학수 번호 교과 목명
전공	ARD 2010	표현기법	전필	ARD 2014 ARD 2016 건축설계 기초A 건축설계 기초B	전필	ARD 4004 ARD 4008 건축 설계1 건축 설계2	전필	ARD 4012 ARD 4015 건축중 합설계1 건축중 합설계2
전공	ARD 2003	건축그래픽스						
전공	ARD 2011	건축개론						
전공	ARD 2020	건축설계입문	전필	ARD 4004 ARD 4008 건축설계1 건축설계2				
전공	ARD 2013	건축과사회						
전공	ARD 2019	서양건축사						
전공	ARD 2017	건축기술1	전필	ARD 4012 ARD 4015 건축종합 설계1 건축종합 설계2				
전공	ARD 2021	건축기술과LAB						
전공	ARD 4031	한국건축사						
전공	ARD 4035	지속가능건축	전필	ARD 4012 ARD 4015 건축종합 설계1 건축종합 설계2				
전공	ARD 4038	건축과도시문화						
전공	ARD 4002	건축환경계획						
전공	ARD 4040	건축기술2	전필	ARD 6010 ARD 6011 ARD 6012 ARD 6013 ARD 6014 건축설계5 건축설계6 건축설계7 건축설계8 건축설계9				
전공	ARD 4037	건축과도시설계						
전공	ARD 4034	동양건축사						
전공	ARD 4033	모더니즘과 현대건축	전필	ARD 6012 ARD 6013 ARD 6014 건축설계5 건축설계6 건축설계7 건축설계8 건축설계9				
전공	ARD 4032	재료와구법						
전공	ARD 4036	건축과컴퓨터						
전공	ARD 4039	건축실무와 법제도						

자) 건축학전공 타 전공 인정 교과목 : 최대 인정 학점 3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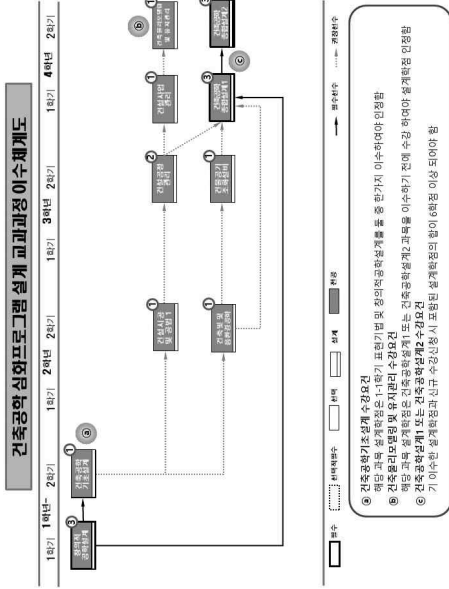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건축공학	ACR2022	건축공학기초설계		선택 1과목만 인정
	ACR2015	재료역학		
	ACR2017	건축구조		
	ACR2018	건설시공 및 공법1		
	ACR2019	건축재료		
	ACR2024	건축열환경공학		
	ACR4055	건축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ACR4042	건설공정관리		
	ACR4061	건설사업관리		
	ACR4036	건설시공 및 공법2		
	ACR4062	건물유틸리티 및 방재시스템		
	미술학부	IDP2002	드로잉1	
IDP2003		드로잉2		
IDP2011		조형론		
IDP2016		현대미술론		
PAI4011		영상연구		

■ 건축공학부내에 개설된 1학년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전공과목	
	건축학	건축공학
1학기	표현기법	어드벤처디자인
2학기	건축그래픽스	건축공학기초설계

건축공학부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공을 결정하기 전에 위의 표에 나타난 1학년 전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의 구분 없이 해당 수강 과목을 모두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전공이 결정된 후에 수강한 것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4. 2020년까지 전공 영역의 설계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3-5. 2021년 설계 교과목 총괄표

필수설계	어드벤처디자인(3), 건축공학설계1(3), 건축공학설계2(3)
선택설계	건축공학기초설계(1), 건설사공및공법1(1), 건설공정관리(2), 건물기기조화설비(1), 건축빛맞춤환경공학(1), 건설사업관리(1), 건축물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1)

주) 괄호 안은 설계학점수를 나타냄.

3-6. 2021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어드벤처디자인	3	3
건축공학기초설계	3	1
건설사공및공법 1	3	1
건설공정관리	3	2
건물기기조화설비	3	1
건축빛맞춤환경공학	3	1
건설사업관리	3	1
건축물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3	1
건축공학종합설계 1	3	3
건축공학종합설계 2	3	3

3-7. 2018~2020년 설계 교과목 총괄표

필수설계	창의적공학설계(3), 건축공학설계1(3), 건축공학설계2(3)
선택설계	건축공학기초설계(1), 건설시공및공법1(1), 건설공정관리(2), 건물공기조화설비(1), 건축빛및음환경공학(1), 건설사업관리(1), 건축물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1)

주) 괄호 안은 설계학점수를 나타냄.

3-8. 2018~2020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건축공학기초설계	3	1
건설시공및공법 1	3	1
건설공정관리	3	2
건물공기조화설비	3	1
건축빛및음환경공학	3	1
건설사업관리	3	1
건축물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3	1
건축공학종합설계 1	3	3
건축공학종합설계 2	3	3

3-9. 2016~2017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건축공학기초설계	3	2
건설시공및공법 1	3	1
건축열환경공학	3	1
건설공정관리	3	2
건물공기조화설비	3	1
건축빛및음환경공학	3	1
건설관리 1	3	1
건물급배수위생설비	3	1
건축공학종합설계 1	3	3
건축공학종합설계 2	3	3

3-10. 2015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건축공학기초설계	3	2
건설시공및공법 1	3	1
건축열환경공학	3	1
철골구조	3	1
건설공정관리	3	2
건물공기조화설비	3	1
건축빛및음환경공학	3	1
건설관리 1	3	1
건물금배수위생설비	3	1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3	1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3	2
건축공학종합설계 1	3	3
건축공학종합설계 2	3	3

3-11. 2014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건축구조재료실험	3	2
건축열환경공학	3	1
건설관리 1	3	1
건물금배수위생설비	3	1
건축공학설계 1	3	3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3	2
콘크리트 구조설계	3	1
철골구조	3	1
건설공정관리	3	2
건물공기조화설비	3	1
건축 빛 및 음환경공학	3	1
건설시공 및 공법 1	3	1
건축공학설계 2	3	3

3-12. 2013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건축구조재료실험	3	2
건축열환경공학	3	1
건설관리 1	3	1
건물급배수위생설비	3	1
건축공학설계 1	3	3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3	2
철골구조	3	1
건설공정관리	3	2
건물공기조화설비	3	1
건축 빛 및 음환경공학	3	1
건설시공 및 공법 1	3	1
건축공학설계 2	3	3

3-13. 2009년~2012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건축구조재료실험	3	2
설계도서 및 견적	3	2
건축열환경공학	3	1
건축공학전산응용	3	1
건축구조해석	3	1
건축철근콘크리트 1	3	2
건설관리 1	3	1
건물급배수위생설비	3	1
건축공학설계 1	3	3
건축철근콘크리트 2	3	1
철골구조	3	1
건설공정관리	3	2
건물공기조화설비	3	1
건축 빛 및 음환경공학	3	1
건설법규 및 계약	3	1
건설시공 및 공법 1	3	1
건축공학설계 2	3	3
개별연구	1	1

3-14. 2007년~2008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건축구조재료실험	3	2
설계도서 및 견적	3	2
건축열환경공학	3	1
건축공학전산응용	3	1
건축구조해석	3	1
건설관리 1	3	1
건물급배수위생설비	3	1
건축공학설계 1	3	3
건축철근콘크리트 2	3	1
철골구조	3	1
건설공정관리	3	2
건물공기조화설비	3	1
건축 빛 및 음환경공학	3	1
건설법규 및 계약	3	1
건설관리 2	3	1
건축공학설계 2	3	3

3-15. 2006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건축구조재료실험	3	2
설계도서 및 견적	3	2
건축열환경공학	3	1
건축공학전산응용	3	1
건축구조해석	3	1
건설관리 1	3	1
급배수위생설비	3	1
건축기획 및 타당성 검토	3	3
건축철근콘크리트 2	3	1
철골구조	3	1
건설공정관리	3	2
공기조화설비	3	1
건축 빛 및 음환경공학	3	1
건설법규 및 계약	3	1
건설관리 2	3	1
건축공학설계	3	3

3-16. 2005년 이전에 이수한 전공과목에 적용되는 설계학점

과 목	학 점	설계학점
창의적공학설계	3	3
설계도서 및 견적	3	2
건축공학전산응용	3	1
건설관리 1	3	1
건축설비시스템 1	3	2
건축철근콘크리트 2	3	1
건축구조재료실험	3	2
건설과정관리	3	2
건설법규 및 계약	3	1
건설관리 2	3	1
건축설비시스템 2	3	2
건축공학설계	3	3
철골구조	3	1

<별첨 3> 공학주제(전공) 영역의 동일 유사 교과목

번호	2004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21년	
1	창의적공학설계									어드벤처 디자인	
2	철골구조	철골구조 1,2	철골구조								
3	건설재료 공법 1,2	건설시공 및 공법 1,2									
4	건축설비시스템1	공기조화설비		건축공기조화설비	건물공기조화설비						
5	건축설비시스템2	급배수 위생설비	건축 급배수 위생설비	건물 급배수 위생설비				건물유틸리티 및 방재시스템			
6		건축환경 공학	빛 및 음환경공학		건축 빛 및 음환경공학						
7		건축일반구조		건물의 이해		건축공학기초설계					
8		건축기획 및 타당성 검토		건축공학설계1		건축공학종합설계1					
9		건축공학설계		건축공학설계2		건축공학종합설계2					
10	건축철근콘크리트1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철근 콘크리트 설계1			
11	건축철근콘크리트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철근콘크리트 구조해석		철근 콘크리트 설계2		
12	건설법규및계약					건설계약및운영					
13	건설관리 1							건설사업관리			

<별첨 4>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및 소개) 건축공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하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건축공학과 내에 둔다.

제2조(목적)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교육목표 및 ABEEK의 공학프로그램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설정, 운영 및 개선을 통하여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연구한다.

1. 프로그램 교육목표 개선안
2.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개선안
3. 학생 평가 시스템 운영 개선안
4. 학생 지도 시스템 운영 개선안
5.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안
6. 교수진 평가 및 운영 시스템 개선안
7. 교육환경 평가 및 개선안
8. 발전계획 평가 및 개선안
9. 졸업 및 인증 요건 개선안
10. 졸업 및 인증 사정 결과
11. 전입생 학점 인정 결과
12. 심화과정 이수 포기 학생
13. 프로그램 교육목표 개선안 도출
14.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개선안 도출
15. 학생 평가 시스템 운영 개선안 도출
16. 학생 지도 시스템 운영 개선안 도출
17.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안 도출
18. 교수진 평가 및 운영 시스템 개선안 도출
19. 교육환경 평가 및 개선안 도출

20. 졸업 및 인증 요건 개선안 도출
21. 졸업 및 인증 사정 결과 도출
22. 전입생 학점 인정 결과 도출
23. 심화과정 이수 포기 학생 도출
24. 각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25.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건축공학과 교수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1인) 및 간사(1인)의 임명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회의) 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소집) 본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건축공학 심화과정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대표의 요청에 따라 비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설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은 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평가위원회
2. 산업체자문 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5> 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및 소개) 건축공학 프로그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건축공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평가위원회는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학습성과 설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교수진과 교육환경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본 평가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육과정 평가
2. 교수진 평가
3. 교육환경 평가
4. 이수 실태를 포함한 학생 관찰
5. 보충학습 시행 및 성과 분석
6. 심화과정 포기 학생 신청서 심의
7. 졸업 사정 시행
8. 편입·전과·복학생 학점인정
9.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
10.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11. 신입생 학업이수능력 평가
12. 재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13. 지도 결과 분석

제4조(구성) 위원회는 건축공학전공 PD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소집) 본 위원회의 소집은 건축공학 심화과정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대표나 본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비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6> 산업체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및 소개) 건축공학 산업체자문위원회(이하 "산업체자문위원회")는 건축공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산업체자문위원회는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산업체 수요 지향적 프로그램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본 산업체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프로그램 교육목표 자문
2. 프로그램 학습성과 자문
3. 수요 지향적 교육과정 자문
4. 프로그램 발전방향 자문

제4조(구성) 위원회는 건축공학과 교수 3인과 산업체 간부 또는 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소집) 본 위원회의 소집은 건축공학 심화과정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대표나 본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비상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7>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세부 항목

1. 프로그램 교육목표 개선
2.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 및 평가
3. 학생 평가 시스템 운영
4. 학생 지도 시스템 운영
5.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6. 교수진 평가 및 운영 시스템
7. 교육환경 평가
8. 졸업 및 인증 요건
9. 전입생 학점 인정
10. 심화과정 이수 포기
11.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

<별첨 8> 건축공학전공 현장실습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 3장 사회봉사 및 현장실습'에 의거하여 건축공학전공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현장실습) ① 현장실습 참여 학기를 기준으로 모든 재학생은 국내의 기업체·연구소·관공서 등에서 현장실습(Internship)을 이수하여 재학 기간 중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본 교과목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실습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현장실습인정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⑥ 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과정은 건축공학전공 현장실습 프로그램 외에 교내의 각종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⑦ 현장실습의 최소 이수시간, 참여가능 기업 등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현장실습의 학점인정 기준) ① 학점은 40시간 이상을 1학점의 기준으로 하되, 연수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연수생이 제출한 보고서, 평가표 등을 토대로 전공주임교수가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② 현장실습학점은 전공과 자유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건축공학 전공주임교수의 평가를 거쳐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전공학점(기초 또는 전문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복수전공자의 경우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기초 또는 전문교육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방학기간 중 현장실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은 1회 참여시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학기간에는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방학 중 현장실습과 계절학기 과목을 동시에 이수할 경우, 두 과정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점은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과목명은 인턴십(Internship)으로 표기하며, 성적표시는 P 또는 F로 한다.

⑥ 휴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전공 또는 자유선택)까지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현장실습 평가 근거) ① 방학 중 인턴십은 최대 전공 6학점(설계 3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적표시 P 또는 F로 한다.

② 학점 인정의 세부 기준으로는 방학 중 실습기간 3주 이상 4주 미만은 3학점, 4주 이상 5주 미만은 4학점, 5주 이상 6주 미만은 5학점, 6주 이상은 6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기 중 16주간의 현장실습은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인턴십의 학점인정은 연수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연수생이 제출한 보고서, 평가표 등을 토대로 전공주임교수가 결정한다.

④ 인턴십의 설계학점은 학생이 현장에서 취득한 설계관련 학습/경험 부분을 포함하는 별도의 "설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전공주임교수가 심사하며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

⑤ IPP(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종합설계 1 또는 2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종합설계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결과보고서의 심사 및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여부를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